

# 「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9. 17 (수) 최귀녀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08. 09.22 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8. 09.22 (월)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평창군의회 의원 최귀녀)

가. 평창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 
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 
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목적(안 제1조)

○ 평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 
규정함

2) 정의(안 제2조)

○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

3) 의원의 의무(안 제5조)

○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준수의무에 대하여 규정함

4) 윤리심사(안 제6조)

○ 윤리심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재임기간동안 올바른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○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윤리강령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규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윤리강령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를 규정하고, 실천규범은 품위유지 의무, 청렴의무, 지위남용금지의무, 비밀유지의무 등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,

○ 안 제6조에서는 위반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절차는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다. 결과적으로,

○ 본 조례안은 2006.04.28 「지방자치법」 일부개정시 삽입된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법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조문의 상위법과의 관계, 자구 등 형식적 배열 등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【붙임】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부.    끝